

토 의 기 록

토 의 기 록

오늘 행해진 일본국과 대한민국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이하 「조약」이라 한다.)의 서명에 이르는 교섭과정에서 일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단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1. 일본국 대표단은 조약 제4조(a) 및 제7조에 규정된 당사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라 함은 일본국에 대해서는 일본국의 형법 제1조제2항에서 말하는 일본선박 및 일본항공기를 의미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형법 제4조에서 말하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 일본국 정부의 이해라는 뜻을 말하였다.
2. 대한민국 대표단은 조약 제4조(a) 및 제7조에 규정된 당사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라 함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형법 제4조에서 말하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의미하고, 일본국에 대해서는 일본국의 형법 제1조제2항에서 말하는 일본선박 또는 일본항공기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이해라는 뜻을 말하였다.

2002년 4월 8일, 서울

T.T. S.J.H.